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엠씨넥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및 적격성을 검증한다.

## 제2장 구 성

### 제4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의 결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 ③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회 의

###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24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8조 (결의 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부의 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77 조)	해당여부
<b>I. 상법 제 382 조제 3 항</b>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b>II.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b>	
1. 미성년자, 금지산자, 한정지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3 항)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4 항)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 34 조제 5 항) 자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 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 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 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 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 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 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해당없음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33 조제 3 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 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할 기간을 더하면 9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자	
<b>Ⅲ. 상법 제 542 조의 8 제 5 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추천받음( ), 해당사항이 없음( )</b>	

20 년 월 일 부로 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000 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상기와 같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